

Special Report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May 10, 2022

지난 5월 3일,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기업환경 변화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3월 '제20대 대선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Special Report를 보내드린 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대선 TF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국정과제 개요 3

II.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및 시사점

1. ESG	5
2. 환경	7
3. 공정거래	9
4. 금융	12
5. 기업지배구조 / 중소·중견기업	14
6. 노동(중대재해)	15
7. ICT	17
8. 헬스케어	21
9. 자동차·모빌리티	23
10. 소비재·유통	24
11. 부동산·건설	25
12. 프로젝트·에너지	26
13. 국제통상	28
14. 형사	29
15. 조세	31
16. 가상자산	34

I. 국정과제 개요

지난 5월 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추진일정을 구체화하여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과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기업환경 변화에 직결**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새 정부 국정비전과 의미

먼저 새 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새 정부 국정운영 원칙과 6대 국정목표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갑니다.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습니다. 추가된 미래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는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본이 되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6대 국정목표는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④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⑥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3. 110대 국정과제 및 521개 실천과제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6개 국정목표 아래 나눠서 배치되었고, **실천과제**는 총 **521개**입니다.

새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 한국경제의 하향 침체국면, 사회갈등 심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도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과제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高 대응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입니다.

※ 별첨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II. 분야별 국정과제 및 시사점

ESG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중 세부실천과제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국정과제-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중 세부실천과제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국정과제-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2. 시사점

ESG 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민간 중심의 ESG 금융·경영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하고 시장 중심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 산업부는 K-ESG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ESG 평가기준의 공통 사항을 취합,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서 K-ESG 가이드라인은 향후 평가기준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예정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평가기준 외에 정부 부처 주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 대응이 기업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해당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지원 차별화는 또다른 유형의 유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진 경과의 지속적 관찰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 독일의 공급망실사법 발효에 이어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해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을 법제화할 것을 논의하고 있어, 규제 대상회사의 공급망 ESG 관리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위 법의 도입 여부와 향후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 탄소노미 마련 및 녹색분류체계 조정 : EU는 올해 2월 그린 탄소노미를, 3월 소셜 탄소노미를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인수위는 EU의 그린 탄소노미, 소셜 탄소노미 적용 시기에 맞추어 국내의 소셜 탄소노미 및 녹색분류체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분류체계는 ESG 금융의 기준이자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ESG 금융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 계획 시 신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ESG 금융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ESG 투자는 정보 및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주치의(기은), 경영컨설팅(신보) 등 중소기업 경영·재무상황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신설·확대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ESG 투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ESG 실사·진단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지원 강화

세제지원 강화와 ESG 경영·투자 지원,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금융 지원 강화는 인센티브를 통한 ESG 투자 유인 및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민간금융은 거시적 성과 및 위험관리보다 단기적 수익에 다소 민감한 편이므로, 민간금융 영역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축소하고 거시적(초장기적) 위험 관리 및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미래핵심기술 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정책 추진을 모니터링하여,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지향적 신사업 추진에 정책금융의 지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는 ESG 관련 정책 중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U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기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비교해 볼 때 탄소 감축 및 저탄소 사업으로의 전환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으로 판단됩니다. 유상할당 대상 기업은 해당 제도에 대한 추적 관찰과 더불어 탄소 감축 및 저탄소 사업 전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환경부는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존 ESG 컨설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자원·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올해 시작된 추가 맞춤형 컨설팅은 ESG 경영체제 구축, 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담당자 교육, 타 지원사업 연계, 환경정보공개제도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의 결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국정과제-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정과제-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국정과제-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2. 시사점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으나, 환경규제 분야의 경우 ▲ 국가 NDC 발표('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의 탈 플라스틱 협약 마련 합의 ▲ EU,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등에서 알 수 있듯 국내 규제의 흐름이 세계 규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신정부에 들어서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원회의 기후·환경정책방안을 보더라도, ▲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순환경제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기존 정부와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 K-Taxonomy에 원자력발전 포함, 에너지 믹스에 대한 논의 본격화

기존 정부와 가장 크게 차별화 되는 지점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 향후 녹색금융, 녹색채권 등을 통한 원자력 발전사업 지원을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믹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 산업계 의견 수렴 확대

또한 새 정부는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하여 부문별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2030 NDC는 유지되더라도 부문별 부담의 규모 및 구체적 이행방법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위원회의 재구성의 균형성을 강조하였는데, 기존에 산업계 인사, 각 분야의 전문가보다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내 산업계 인사 등의 비중 확대를 통해 상기 이행목표·방법의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무역장벽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유상할당 확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배출권 대비 배출량, 유상할당되는 비중의 비용 반영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기업으로서는 향후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입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규제 및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규제 강화 대응

발표된 국정과제에 의하면, 향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이 5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현재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점검하고 향후 배출허용총량의 축소에 따른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순환경제 구축 기초 유지, 열적·화학적 재활용 확대

한편 새 정부는 주요 목표로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물질재활용보다 열적·화학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 시장 육성 의지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기초 하에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확대(’22.6.1회용컵 보증제 시행), ▲’20년 대비 ’25년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20% 감량 ▲ 재생원료·재사용 포장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열적·화학적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1회 용품 규제, 과대포장 규제, 플라스틱 포장 규제 등 물질 재활용 위주의 규제 역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자원낭비 및 폐기물발생 감축을 위하여 신설되는 규제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과 비용소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석유, 화학 원료 및 수소원료로의 재활용이 허용되고 페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므로 관련 산업계의 대비와 신사업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가축 분뇨 등에 대한 자원화 등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음식물 및 분뇨 처리 업체의 법규 준수 및 설비 개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국정과제-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을의 피해 구제

[국정과제-33]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

2. 시사점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전반적인 시사점: 규제완화와 자율규제) 새 정부의 기본적인 공정거래 관련 정책 기조는 **규제완화와 자율규제**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업무도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관여 보다는 경쟁영향평가센터 구축 등 원활한 경쟁 매커니즘의 운영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적 규제의 체계적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민관 또는 산학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PEF 설립, 완전 모회사 간 합병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규제당국 또한 과도한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부담을 줄여 경쟁제한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시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시정조치의 이행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난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도입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2.3월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최초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경쟁 확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담합행위 등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대한 법집행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자율규제 기조를 감안하면 이러한 기존에 어긋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집행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신규 지정 또는 지정이 임박한 집단이나, 규제대상 계열사가 증가한 기존 집단들의 경우 내부거래와 관련된 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도 운용) 최근 검찰 수사권 관련 논쟁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의 존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부처 간 첨예한 논란이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 당장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보다 객관적 고발기준이 마련되고, 검찰과 공정위 사이의 협업 내지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 감사원, 조달청 등 의무고발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일인 관련자’로서의 친족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예시된 것처럼 친족범위가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으로 축소되면, 기존의 친족 관련 자료제출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공정위는 향후 친족 관련 자료 누락 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을의 피해 구제

(온라인 플랫폼 분야 관련 정책 기조)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先 자율규제, 後 상황에 따른 최소 규제**’라는 기조 하에 **자율규제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역점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법 등 일련의 규제 도입은 당분간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의원발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자율규제의 성과와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행위 또는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집행도 예상됩니다. 한편, 새로운 규제 도입과 별개로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및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감시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관련 사업자들은 자발적 정보제공, 표준계약서 준수, 자진시정,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등 자율규제 및 상생적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최근 국내외 상황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관심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납품업체 등 “乙”에 대한 권익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한 의원입법도 다수 발의 중입니다. 공정위 또한 2022. 4.부터 납품단가 조정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요건·절차·방법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정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적 분쟁해결 제도) 새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법상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하는 ‘분쟁조정통합법’의 제정이나,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가맹분야(가맹종합지원센터, 2020. 9.부터 시범 실시) 및 대리점 거래 분야에 한정된 “乙” 위한 지원체계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공정위 소관 갑을관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적인 법 위반 예방 노력과 함께 실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하여 소비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정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감안하여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

(기술탈취 근절)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유용) 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조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공정위의 수시 직권조사가 확대되고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기부에서도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법집행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2. 3. 하도급분야에서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2022. 2.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의 신속한 회복) 불공정거래피해의 신속한 회복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관련하여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고발 필요성 여부 판단시 고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간에 새로운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과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 강화

[국정과제-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국정과제-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국정과제-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2. 시사점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 강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및 민감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의 축소로 인하여, 관 주도의 금융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금융 혁신 및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규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사업 확장에 있어 규제 위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사고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검토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금융혁신

빅테크나 플랫폼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나 고객정보 보호 등 준수해야 할 규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빅테크나 플랫폼 업체와의 접점이 넓어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기존 빅테크나 플랫폼 업체들이 누리던 규제차익이 줄어들게 되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고 발생시 제재 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도, 새로운 규제 도입시 선제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기관 등 전통산업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반면, 이와 관련한 규제의 공백이

메워짐에 따라 기존에 디지털자산 사업을 운영하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와 동시에 새로이 도입될 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신사업 진출로 인한 해킹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요청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모험자본 활성화

공매도, 물적분할 후 상장, 내부자거래 관련한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담당 조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사에서는 내규 점검,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분할 및 신규투자자금 조달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사에서는 내부자거래와 같은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예대마진 비교공시 제도 및 간편결제수수료 공시 제도 개선 및 도입에 따라 은행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서도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서의 수익성을 제고하면서도,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사 및 빅테크 기업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바일 OTP나 펫보험 관련하여서는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 내지 비용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관련 업체에는 역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용의 측면에서는 이에 대비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및 시장에 신속히 진출하여 신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중소·중견기업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2. 시사점

◆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 유지

과거 정부도 그렇고 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고, 이번 주요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모태펀드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신기술투자조합과 같은 벤처 펀드들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태펀드의 경우 이미 상당한 자금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등의 민간 투자가 비교적 저조하였는데, 이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Exit)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중대재해)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국정과제-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국정과제-52]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정과제-54]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국정과제-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 시사점

◆ 산업재해 관련

새 정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와 추진과제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향후 로드맵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침과 매뉴얼 등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되,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이므로 당분간 중대재해 사고 대응을 통해 법 집행사례를 축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행령과 지침 등을 개정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개정 여부는 정부의 산재 감소 노력에 대한 기대, 국회 구성상 입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노사관계 및 일자리

공정채용 입법은 대선공약에서 밝힌 대로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단체협약내정년·장기근속자자녀우선채용 등 불공정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시정 절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를 통해 개선
-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를 자율적으로 피드백하도록 지원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선공약에서 언급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편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별임금공시제보다 완화된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채용·근로·퇴직 등 모든 고용단계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현행 고용형태공시제(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6)와 같이 대규모기업에 대해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난임휴가 기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white-collar exemption)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대선공약과 같으나, 건강권 침해·과로사 초래 등의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상생형(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합의제도를 개편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 절차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의 조정기능 강화,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등도 대선공약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 기타

그 외 고용분야 국정과제 역시 대선공약과 대동소이하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확대되어 온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의 지원을 조정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확대 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과 재직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지원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CT

1. 주요 국정과제

< ICT 부문 >

- [국정과제-11]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국정과제-22] 경제체질 선진화: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 [국정과제-29]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국정과제-30]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국정과제-75] 과학기술 선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국정과제-77] 과학기술 선도: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국정과제-78] 과학기술 선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미디어 부문 >

- [국정과제-6] 상식과 공정의 원칙: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국정과제-27] 핵심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국정과제-58] 문화공영 실현(1):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국정과제-59] 문화공영 실현(2):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 시사점

◆ ICT 부문

새 정부의 ICT 분야 국정과제의 큰 틀은 ‘시장중심의 ICT 산업 발전과 고도화를 추구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 ICT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민간의 영역에서는 R&D 및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추진하며,

- 민·관 협력으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인프라 차원에서의 5G 6G 네트워크 고도화와 디지털 혁신을 강화
- 한편, 국민을 지향하는 디지털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맞춤형 디지털 복지 지원을 추진
- 이와 같이 ICT 분야의 국정과제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R&D 및 고도화를 통한 진흥과 육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개입 가능성이 높음

(ICT 분야 국정과제 시사점) ICT 분야 국정과제 중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①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보호 강화, ②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수립, ③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제 도입, ④디지털 안정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⑤디지털 이용부담 경감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포함

①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보호 강화** : 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높이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등의 국정과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정안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수립** : 새 정부는 메타버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보다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합동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특별법에 메타버스 생태계의 유연성 및 혁신성,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바,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정안 마련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규제 체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비(非) 규제 영역인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특화된 규제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직적인 법정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규제 체제 수립까지는 이해관계자의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 규제 권한의 이양 범위와 제재 수준 등 향후 정부의 검토 및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규제 체제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합의 모색 노력 등이 필요하고, 플랫폼 갑질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④ **디지털 안정성 및 안전관리 강화** : 디지털 대전환 및 초연결 시대에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안정성과 안전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 사고, 정보보안 침해 사건 등이 갖는 파급력이 보다 확대됨에 따라 네트워크 장애 대응이나 안정성 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안전관리의 디지털 지능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표준이나 규범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⑤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맞춤형 요금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과거 이용요금 지원 중심의 단편적인 지원에서 국민의 이용 수요에 부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은 시장의 성장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와 성장을 모두 달성하는 지원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미디어 부문

새 정부의 미디어 부문 국정과제의 틀은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중심의 방송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하여 공영방송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강화하며,
- 전통적 미디어의 규제 혁신과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방송 활성화 및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여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와 공적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 방향
-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OTT 활성화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같이 미디어 부문의 국정과제는 대규모 법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정과제 이행 및 추진 과정 전반에 면밀한 검토와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의 시사점)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중 주목해야 할 사항은 ①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②전통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③OTT 활성화 지원, ④미디어 접근권 강화 및 이용자 보호

- 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공영방송 관련 이슈의 핵심이자 난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 등 거버넌스 개선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위상 정립 및 제도 개선은 방송미디어 정책의 시발점이며, 공-민영 체계의 명확화라는 방송정책의 기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협약 방식으로 전환, 방송평가에 ESG 반영, 수신료 산정 및 운용 전담 기구 설립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자칫 정치적 이슈로 비화할 경우 미디어 분야 제도 개선 및 국정과제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② **전통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통적 방송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규제체계 개편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통합을 넘어 방송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논의, 과기정통부의 중 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재편 방안 논의의 연장선에서 종합적인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은 ‘미디어혁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숙의되고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요 아젠다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OTT 활성화 지원** : 새 정부는 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한 OTT 활성화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주로 진흥과 지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OTT 업계가 요구해왔던 세제혜택, 자율등급제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글로벌 콘텐츠 IP 보유 기업 육성, 정책금융 지원 등 콘텐츠 중심의 제작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 21일 OTT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OTT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TT-음저협 분쟁, OTT 시장의 공정경쟁,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 이슈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④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및 이용자 보호** : 미디어의 공적가치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재난방송 수어제공 확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수어방송의 편성비율을 확대하고, 재난방송에 대해서도 수어방송을 의무화시키도록 장애인 방송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방송 관련 별도의 법 제정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한편, OTT를 포함한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1. 주요 국정과제

- [국정과제-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국정과제-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국정과제-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국정과제-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국정과제-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국정과제-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 시사점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개편 및 방역체계 선진화에 따라 대규모 항체조사를 통한 근거 중심 방역의 활성화, 독립적 전문 자문기구 설치 등 감염병 대비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관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확보 및 백신 추가접종 등 세부 추진 과제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 확보 기업의 추가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법·제도적 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정밀의료 확산과 의약품 등 제품개발을 위해 공공분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 및 활용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치료제 분야에서 전략기술 집중투자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부의 제품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련 분야 기업등의 서비스 및 상품개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새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방침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와 약가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는 약품비 지출 적정화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므로, 필수약품이 아니면서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약가 통제(재평가, 급여삭제 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관련 상품과 기술(앱) 개발 기업의 시장이 공식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련 법·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새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헬스 및 비대면진료의 법·제도 개선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정책에 따라 추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 선정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기술보유 및 생산을 위한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모빌리티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정과제-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국정과제-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2. 시사점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업규제 완화, 신기술 개발 지원, 산업생태계 구축** 등에 정책적 방점을 두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 등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 이르는 **모든 이동 수단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2025년 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인프라·제도·실증기반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 과정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면개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3년 후 상용화 추진 중인 **UAM 관련 규제 신설·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모빌리티 관련 국정과제는 ‘MaaS (Mobility as a Service)’ 또는 ‘Streaming Mobility(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이동 서비스)’ 개념의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견인하게 될 것이고, 국민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에 고무적 분위기를 조성할 전망입니다.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는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i) 새롭게 신설되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ii) One-stop 온라인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 및 (iii)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등 신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인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은 이동장치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사업자 등록,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벌칙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은 본 법안의 입법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및 일정은 신임 장관 취임 후 각 부처 차원에서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국정과제 이행 및 추진경과를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재·유통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 시사점

◆ 먹거리 안전 국가 관리감독 강화 기조 유지

HACCP 인증 업체의 불량 식재료 사용 논란 등 식품 위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 마련이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계획을 통해 발표되었고, 새 정부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조, 배송,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이슈가 있었던 온라인·새벽배송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 체계의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새로운 정부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법령,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바,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체 중심의 유해물질 총량 평가제도 강조

이미 2022. 1.에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에 관한 내용임. 이 제도는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총량 관리, 정보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새로운 정부가 제도의 운영 추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규제 강화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 의한 이 제도의 안착과 강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정과제-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2. 시사점

◆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대선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꼽혀 왔습니다. 선거기간 중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 활성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새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규제완화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원희룡 후보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적정성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원 후보자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에 정비사업 촉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도변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관련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선회

대선공약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목표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자체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단기간에 도입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보급 및 관련 조정제도 정비(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조합의 대협협상 활성화, 조정불응시 위법행위 엄정 시정)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의 공약은 납품단가 연동제 직접 도입보다는 사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시간에 시장에 영향을 줄 구체적 제도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에너지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2. 시사점

◆ 2030 NDC 달성을 위한 원전 비중 지속 확대 전망

탈원전 폐기(復원전)를 주요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탈원전 폐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목표는 유지하되, NDC 달성을 위하여 무탄소 전원 중 원자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 에너지 믹스 변경이 예상됩니다. 2030, 2050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의 변경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투자 및 원전의 적극적 수출 전략 추진 전망

파이로프로세싱, SMR,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차세대 원전기술 적극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 한수원을 포함한 코리아 “원팀” 주도의 수출 추진 및 이를 통한 하부 연계 산업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원전연계 수소의 청정수소 편입이 기대됨에 따라, 신규 제도가 수소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관련 사업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확보 정책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안전확보는 원전 확대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이슈 사항입니다.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사용후핵연료 입지선정 포함)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폐장 확보 등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의견 충돌 관련 보상기준 및 보상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 변경 및 재생에너지 비율 조정 예상

탈원전 폐기(復원전)의 연장선상에서,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믹스 변경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가 언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육성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석탄발전 등 감축 정책은 유지됨에 따라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풍력발전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국정과제에 “풍력산업 고도화”가 명시되었고 이는 해상풍력발전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믹스 변경과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1등 수소 강국 달성

원전연계 수소를 중심으로 안정적 수소 생산·공급기반 생태계 마련이 예상됩니다. 연내 청정수소 제도(청정수소 정의, 청정수소 전용계약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관련 법적 기반 마련 및 하위 법령 정비가 기대됩니다. 원전연계 수소, 청정수소 계약시장 등 제도 도입 현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소 및 수소 유관 산업 진출 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시장구조 개편을 통한 선진적 전력시장 구축 등 전력시장 관련 다양한 정책 추진이 예상됩니다. 탄소 중립과 연계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정산제도 개편, RPS 제도 개편, 요금제 개편 등 보다 합리적인 전력시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기대됩니다. RE100 및 직접 PPA·제3자PPA 등 직접전력거래를 통한 분산형 전원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향후 소규모 전력거래 관련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국정과제-97] 상생공영의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정과제-98] 능동적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체계 구축

[국정과제-99]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2. 시사점

◆ 미중 격돌의 시대에 외교안보 정책과 특히 통상·기술 외교의 축을 미국에 두고 중국은 적절히 관리하는 접근방식 예상

미중 간 지정학(geo-economics)적 대립은 신기술과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생산국인 한국은 미중 양측에 긴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시장 분리(decoupling)가 일어나고 미국이 동맹국과 동반자국과의 연합 대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원천 기술이 서구에 있고 미국·유럽·일본 시장이 중국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불가피합니다.

중국이 대응조치를 취하여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중국시장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시장 분리·공급망 단절에 따른 위기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급선을 다변화하여 위험분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간의 지정학적 대립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이 사드 보복 때와 유사하게 한국에 경제보복을 취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대중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 전환에 따른 한중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CPTPP, IPEF 등 역내 주요 무역협정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대외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상기 협정 체제는 환경, 노동, 보건 등에서 고도의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디지털 변환경제에 부합하는 변신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국정과제-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2. 시사점

◆ 검찰 정치적 중립성 강화

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 예산편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이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위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다수 발동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하여 검찰청법 제8조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더불어 검찰에 예산 편성권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도록 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패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 및 경찰도 위 부패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법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하도록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장치 개선, 관련법 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경찰 등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및 피해 보호 강화

날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및 피해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주취감경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무고·위증·사기 등 적발 강화, 신종 사기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단,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법·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새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심리치유 지원 사업, 법률구조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변 보호부터 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 시스템 구축, 사회적 취약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 및 범위 재조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세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국정과제 36] 지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2. 시사점

◆ 종합부동산세 개편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개편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를 주택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세율체계 등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부과로 통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완화는 주택매도를 억제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월세 및 전세 관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5월 10일부터 1년 정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동 기간에 매도를 하는 경우 20% 내지 30%의 양도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되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증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적인 개편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자체를 조정하여 ‘뚝뚝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기업이 회사 내에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금인 유보금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부족한 세수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아니하였는 바, 배당이 늘어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배당의 촉진은 규제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의 구체적인 배당촉진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대선 공약에 의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세제를 정비하여 AI반도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등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는바, 현재 낮은 비과세 한도와 누진소득세율 구조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사업장 신·증설 기간을 감안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하나, “3년 내”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은 이러한 감면요건 완화 외에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제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현재 원활한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량 장수기업의 폐업과 매각 위험이 있으므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을 현행 7년보다 단축)한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이 발표된 바 있으며, 기업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제당국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SG 경영 · 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대선 공약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ESG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 현황을 평가하고,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주식,채권,펀드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20년말 세법개정으로 '23년부터 과세되도록 세법개정이 완료된 상태인 바, 주식양도차익만 제외시 소득종류간 과세불형평문제가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 자체를 몇 년 더 유예하거나, 초고액소득자를 제외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만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안은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주식시장투자활성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코인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금융투자소득과세와 같이 '23년부터 과세되도록 세법개정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 부분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법제화된 후로 연기되어 금융투자소득과세의 시행시기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1. 주요 국정과제

[국정과제-35] 디지털 금융혁신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2. 시사점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기구,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향후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논의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하며(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하여 발행·상장·불정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증권에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규제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는 증권형 코인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통과하려면 최근 뮤직카우 건에서 제재절차 보류 조건을 부과한 것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산 절연, 예치금 별도 예치, 공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피해 보상 체계 등)를 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그 밖에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률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부과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며(주요 국정과제 36 중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P2E 게임과 관련하여는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언급된 바 없으나 앞서 언급한 법률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입법전략자문팀] - 입법전략자문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장대섭 | 고문 T. 02-316-4639 E. dsjang@shinkim.com

[기업자문M&A그룹] - 기업지배구조

- 이동건 | 파트너변호사 T. 02-316-4297 E. tglee@shinkim.com
- 이수균 | 파트너변호사 T. 02-316-1630 E. sklee@shinkim.com

[노동그룹] - 노동(중대재해)

- 김동욱 | 파트너변호사 T. 02-316-1646 E. dwokim@shinkim.com
- 윤혜영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91 E. hyyun@shinkim.com

[공정거래그룹] - 공정거래

- 박주영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692 E. jyoungpark@shinkim.com
- 석근배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40 E. gbseok@shinkim.com

[ICT그룹] - ICT

- 강신욱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 이종관 | 수석전문위원 T. 02-316-4480 E. jkwlee@shinkim.com

[규제그룹] - 헬스케어 / 자동차·모빌리티 / 환경 / 소비재·유통 / ESG

- 이용우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07 E. ywlee@shinkim.com
- 홍수희 | 파트너변호사 (헬스케어) T. 02-316-4315 E. shhong@shinkim.com
- 이해정 | 파트너변호사 (자동차·모빌리티) T. 02-316-1719 E. hjelee@shinkim.com
- 황성익 | 파트너변호사 (환경) T. 02-316-4417 E. sihwang@shinkim.com
- 최정은 | 파트너변호사 (소비재·유통) T. 02-316-1672 E. jechoi@shinkim.com
- 장윤제 | 전문위원 (ESG) T. 02-316-2895 E. yjjang@shinkim.com

[기업금융그룹, 금융규제그룹] - 금융

- 장윤석 | 파트너변호사 T. 02-316-4385 E. ysjang@shinkim.com
- 정찬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35 E. cmjung@shinkim.com
- 최윤호 | 파트너변호사 T. 02-316-1671 E. yhchoi@shinkim.com

[건설부동산분쟁그룹] - 부동산·건설

- 김용호 | 파트너변호사 T. 02-316-4202 E. yhokim@shinkim.com
- 신정하 | 파트너변호사 T. 02-316-1681 E. jhashin@shinkim.com

[프로젝트에너지그룹] - 프로젝트·에너지

- | | | |
|----------------|----------------|-----------------------|
| • 이상현 파트너변호사 | T. 02-316-4068 | E. shlee@shinkim.com |
| • 양승규 파트너변호사 | T. 02-316-4048 | E. sgyang@shinkim.com |

[국제분쟁그룹] - 국제통상

- | | | |
|---------------|----------------|-----------------------|
| • 김두식 대표변호사 | T. 02-316-4223 | E. dskim@shinkim.com |
| • 신각수 고문 | T. 02-316-4020 | E. ksshin@shinkim.com |

[형사그룹] - 형사

- | | | |
|----------------|----------------|------------------------|
| • 이건주 파트너변호사 | T. 02-316-4211 | E. kjlee@shinkim.com |
| • 강정석 파트너변호사 | T. 02-316-1761 | E. jsekang@shinkim.com |

[조세그룹] - 조세

- | | | |
|---------------|----------------|------------------------|
| • 백제흠 대표변호사 | T. 02-316-4052 | E. jhebaik@shinkim.com |
| • 노형철 세무사 | T. 02-316-4483 | E. hcrho@shinkim.com |

[가상자산] - 가상자산

- | | | |
|----------------|----------------|------------------------|
| • 이동률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7 | E. drlee@shinkim.com |
| • 황현일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53 | E. hihwang@shinkim.com |
| • 오재청 소속변호사 | T. 02-316-1782 | E. jcoh@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